

중앙여심위, 제22대 국선 대비 “선거여론조사 설명회” 개최

= 최근 개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 및 주요 위반사례 등 안내 =

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(위원장 이내영, 이하 “여심위”)는 12월 6일(수) 여론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선거여론조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.

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4개월 여 앞두고 개최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선거여론조사 기관 및 여론조사기관단체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여 최근 개정된 여론조사 기준 및 관련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.

여심위는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중심으로 심의제도, 신고신청 및 조사결과 등록 시 유의사항, 주요 위반사례 등을 안내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.

또한,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·질문지 작성과 휴대전화 가상번호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여 여론조사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.

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가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여론조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.

붙임 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 및 「선거여론조사기준」 최근 주요 개정내용

[붙임]

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 및 「선거여론조사기준」 최근 주요 개정내용

□ 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 (2023. 7. 1. 개정·시행)

-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중 분석전문인력 수(1명→3명) 및 자격요건, 상근 직원 수(3명→5명), 연간 매출액(5천만원→1억원) 상향 조정
- 선거여론조사기관 실태점검 근거 규정 마련(정기점검 연1회, 필요 시 수시점검)

□ 「선거여론조사기준」 (2023. 11. 2. 개정, 2023. 12. 1. 시행)

-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·보도 금지 및 권고 무선 응답비율 상향(60%→70%)
- 조사결과 인용 공표·보도시 조사방법(전화면접·ARS) 알림 의무화
- 피조사자 선정 및 결과 분석 시 60대와 70대 이상 구분 등록 의무화(조사대상 지역의 연령대별 구성비율 상 70대 이상 비율이 10% 이상인 경우에만, 10% 미만인 경우 자율적 구분)
- 전체 질문지를 선거여론조사결과 최초 공표 시 동시 공개(2024년 1월 시행 예정)